예 산 총 칙

2005 년도 [1 회추경]

* 제1조 : 2005 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세입·세출 예산 총액	일 시 차 입 한 도 액
총 계		714,392,000	21,431,760
일 반 회 계		627,900,000	18,837,000
특 별 회 계		86,492,000	2,594,760
	하수도사업특별회계	10,235,000	307,050
	주택사업특별회계	3,690,000	110,700
	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	10,162,000	304,860
	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	1,832,000	54,960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,782,000	83,460
	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	2,401,000	72,030
	치수사업특별회계	1,032,000	30,960
	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□	1,316,000	39,480
	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	643,000	19,290
	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	17,539,000	526,170
	청소사업특별회계	34,860,000	1,045,800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 ※상수도(공기업)사업 특별회계 : 43,494,000천원

제3조 200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,000백만원으로 한다.

제4조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"사고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128,250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,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
2. 공공요금 및 제세, 급량비, 복리후생비, 직급보조비
3. 배상금, 국선변호료, 법정보상금
4. 지방채 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 경비
5. 재해 대책비
6. 반환금
7. 선거관련 경비